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917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 상향 등	2

I. 개요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91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9. 11.
- (3) 회 부 일 : 2025. 9.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간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제1항 및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 상향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을 해당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기 부과한 보험료 총액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제1항 및 제104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 ¹⁾ 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u>100분의 10</u>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78조의2(가산금) ① ----- ----- ----- ----- ----- ----- -- <u>100분의 40</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7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시행일: 2026.1.1.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

- 1)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²⁾에 따르면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나,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현역병, 군간부후보생 등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고,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됨.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³⁾, 이로 인하여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에 비하여 보험료가 적을 수 있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고액재산가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아닌

-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제5조(적용대상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健康保險"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加入者"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有功者等醫療保護對象者"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표준소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구분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①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산정한다.
- 제64조(부과표준소득) ①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으나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여 적발된 건수가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 2024년 3,991건에 달함.

□ 이에 현행법령⁴⁾은 사용자가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아닌 사람 또는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기 부과한 보험료 총액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억 1,318만원, 2023년 2억 133만원, 2024년 4억 7,717만원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각각 1억 838만원, 1억 7,447만원, 3억 8,455만원을 징수하였음.

4)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 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3(가산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경우
2.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산금 부과·징수 현황 >

2025. 9. 30. 기준 (단위: 건, 천 원, %)

적발연도	가산금 고지		가산금 납부	
	건수 ⁵⁾	금액	금액	납부율
2024	803	477,168	384,546	80.59
2023	408	201,331	174,468	86.66
2022	218	113,178	108,377	95.7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은 증가하는 허위 신고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가산금을 기존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⁶⁾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그 적발률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부정행위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고,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가입자 명수로 산정된 것과 달리 가산금 고지건수는 실제 가산금을 고지하는 사용자 명수로 산정되었고, 공단은 가산금이 3천원 미만으로 감액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착오·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부 지침에 따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어 적발건수와 가산금 고지건수 간 차이가 발생함.

6)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확정보험료와 납부한 개산보험료⁸⁾ 간 차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 관련 입법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⁷⁾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울러, 포상금과 관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는 원래 위반행위를 적발해야 할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낮추고, 과잉신고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⁹⁾되기도 하나,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특수관계(가족, 친구 등)를 통해 허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단속·적발하기 어려운¹⁰⁾ 허위 신고를 적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는 것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를 및 산재보험료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를 및 산재보험료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9)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5.) p.700

1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도 허위 신고 적발 건수(3,991건) 중 1,544건(38.7%)이 가족 등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설명임.

- 한편, 안 부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포상금 시스템 개편 및 사전홍보·안내 등을 위하여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 부정행위로 국세·지방세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는 데 반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에 대한 가산금은 10%로 제재의 효과가 낮다는 점에서 가산금 상향에 동의하고,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수관계(가족, 지인 등)인 경우가 많아 허위취득 사실이 은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 신고를 통한 적발이 중요하므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에 동의함.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부터이나, 포상금 시스템 개편 및 사전홍보·안내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간의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및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가산금의 상향부과 및 관련 포상금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다만, 기존 포상금 시스템의 확대 구축, 배포·검증 및 안내·홍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503